



www.humanrights.go.kr
차별없는 세상, 모두를 위한 평등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개소 15주년 기념

지역사회 인권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실효적 이행 방안

일 시 2020. 10. 13.(화) 14:00~16:00

장 소 부산인권교육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지역사회 인권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제1부 : 개소 15주년 기념, 부산인권사무소에 바란다〉	
14:00~14:05	❖ 인사말
14:05~14:10 (5분)	❖ 사진으로 보는 부산인권사무소 15년
14:10~14:15 (5분)	❖ 부산인권사무소 15년 활동보고
14:15~14:50 (35분)	부산인권사무소에 바란다 송정문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한아름 이주민과 함께 사무처장
14:50~15:00 (10분)	장내정리
〈제2부 : 지역사회 인권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	
좌장 : 이경우 소장	
15:00~15:20 (20분)	[발제]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실효적 이행 방안 - 부산광역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정귀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15:20~15:35 (15분)	[토론 1] 지자체 인권제도 실효적 이행을 위한 과제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15:35~15:50 (15분)	[토론 2] 지자체 인권제도 실효적 이행을 위한 과제 이정은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5:5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목 차

● 개소 15주년, 부산인권사무소가 걸어온 길	1
● 부산인권사무소에 바란다	31
송정문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33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35
한아름 (이주민과 함께 사무처장)	41
● [발제]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실효적 이행 방안 - 부산광역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43
정귀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 [토론 1] 지방자치단체 인권 제도 실효적 이행을 위한 과제 -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	61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 [토론 2] 지자체 인권제도 실효적 이행을 위한 과제	73
이정은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역사회 인권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

개소 15주년, 부산인권사무소가 걸어온 길



개소 15주년, 부산인권사무소가 걸어온 길

1. 지역사무소 설치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순회상담과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지역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위원회에 대한 지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진정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내부적으로도 지역사무소 설치 방안이 검토되고 있었다. 위원회는 지역사무소 설립을 위한 검토 작업을 거쳐 부산과 광주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령(「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을 2005년 5월 30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10월에 부산·광주 지역 사무소(2009년 4월 지역인권사무소로 명칭 개칭)를 개소하였고, 이어서 대구·대전인권사무소를 2007. 7. 1., 2015. 10. 15.에, 2017. 6. 1. 강원인권사무소를, 2019. 11. 1. 제주출장소를 각각 설립하였다.

2. 지역사무소 주요 업무

2005년 10월 개소 당시 지역사무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을 근거로 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 구금·보호시설 등에 대한 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 △ 위원회의 조사 지원, △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단계적으로 조사권이 이양되었는데, 2006년 9월 교정시설 조사권을, 2009년 4월 다수인보호시설(정신보건기관) 조사권을, 2014년 9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2016년 3월 각급학교, 공직유관, 장애차별사건 조사권을, 2019년 1월 경찰사건 조사권을 이양받는 등 조사대상 업무 영역을 확대시켜 왔다.

3. 연도별 부산인권사무소 주요 업무

〈 2005년 〉

지역순회상담과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지역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2005. 10. 11. 부산지역사무소가 개소하였다. 부산지역사무소는 개소 다음날부터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를 시작했다.

특히 지역사무소 개소의 최대 이점인 거리상의 접근성 향상으로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를 위해 찾는 방문자가 늘고 있다.

부산지역사무소는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지역의 기관 및 시민사회 단체 주최의 간담회 및 각종 행사에 참여했으며 지역 언론을 통해 홍보 활동을 벌였다.

세계인권선언 57주년을 기념하여 부산지역사무소 차원에서 인권주간을 마련하고 인권영화상영, 시민과의 대화, 인권토론회, 구치소 방문행사 등 입체적인 활동을 벌였다.

지역의 인권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조사 지원 활동을 통해 구현되었다. 순천 현대 하이스코 점점 농성 관련 진정사건 조사,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불거진 폭행에 대한 진정 사건 실지조사,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조사지원 등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기동성을 발휘함으로써 지역사무소의 존재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지역사무소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부산지역사무소는 개소 후 약 3개월 동안 지역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집중하였다. 지역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 직원들의 업무분장과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대외적 기반 확대를 위한 기관 및 단체 협력과 홍보 사업 등 대체로 지역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산과 광주지역 시민사회와 유관 기관의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짧은 기간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부산지역사무소 개소식 현판식 진행 광경
2005.10.11.



〈 2006년 〉

2006년 부산 지역에서는 서울·경기 지역 다음으로 많은 새터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역 정착 지원 방안이 없다는 문제 제기과 함께 지원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통일학교 관련 교사 수사에서 경찰관이 고등학생을 찾아가 조사한 것이 문제가 됐다. 울산 지역의 경우 학생에 대한 부당 징계, 학내 성폭력사건 등 학생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졌으며 경남 지역에서는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해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단체」를 포함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 움직임이 있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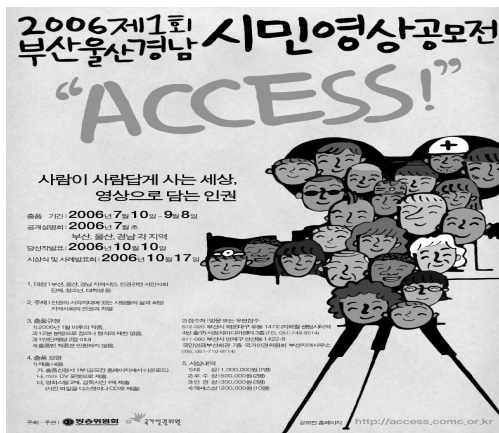
2005년에 이어 사업장 폐쇄 조치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계약직) 집단 해고, 부당해고 조치에 저항해 고공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인권침해, 학교 급식 사고 발생 책임을 물어 비정규직 조리보조원을 집단 해고한 사례 등 부산·울산·경남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다.

이러한 지역의 다양한 인권 현안 속에서 위원회는 현장성과 실효성을 갖춘 인권 보호·증진 활동을 펼치기 위해, 2006년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역사무소의 조기 안정화」를 선정했고, 이를 위해 다양한 직무 전문성 교육을 실시했으며, 「인권 상담전화 1331」 지역 개통 등 행정 시스템 구축에 힘썼다.

또한 지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울산·경남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지역 사업의 본격화」를 위해 「지역 인권 순회상담」을 두 차례 실시했으며, 진주 인권 한마당과

울산 인권마라톤 및 인권영화 상영 등을 지원했고 다양한 지역 행사에 위원회가 제작한 인권포스터 및 인권영화 등 문화 콘텐츠를 제공했다.

2006년은 장애인시설 등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해였다. 그 결과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타 지역에 비해 부산지역사무소 관할 지역 내에는 상당수의 다수인 보호시설이 있고, 부산에 소재한 ○○병원 직권조사 결과에서 보듯 그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사무소에서는 인권침해 예방 및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1차적으로 부산·울산 지역 정원 100인 이상 정신의료시설에 대한 진정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시민인권영상공모전 2006. 7.10



진정함 실태조사 2006. 11.~12.

〈 2007년 〉

2007년 4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은 특히 부산지역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지난 2001년 2월 부산지역 ‘열린네트 워크’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토순례대행진’의 시작으로 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그로부터 6년여가 흐른 2007년 법 제정 및 2008년 4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사무소는 지역의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시행령 제정과정에 담길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하나 2007년 사업의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사무소라는 이점을 살려

지역민의 인권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는 ‘인권조례’에 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지역의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며, 지역민의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조례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그러한 문화 조성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인권조례 제정과정을 듣고 국내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개최한 ‘일본의 인권조례제정 사례와 한국에서의 과제’ 토론회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8년에도 ‘인권조례’ 관련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그 외 △꾸준히 증가하는 상담·민원·안내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향상 △진정사건 대비 인용률 증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안정적 홍보매체 발굴 △인권 공동체 외연 확대를 위한 각종 교류협력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친숙한, 균형감과 책임감을 지닌 인권지킴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상반기 진주지역 순회상담 2007. 6. 16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국제워크숍 2007. 2. 23

〈 2008년 〉

2008년 4월, 관할 구급시설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우편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조사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소도시 중심의 순회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지역민의 권리구제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관할지역 내 장애 차별 등을 비롯한 차별사건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이 2007년 137건(진정접수 30건)에 비해 42건이 증가한 179건(진정접수 45건)으로 그간 관행으로 인식되어오던 성별(성희롱 포함), 나이, 병력, 장애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가 눈에 띈다.

2008년은 4. 1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과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지역민과 함께 나누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지역 안착화와 함께 차별인식 개선, 차별 예방을 위한 각종 설명회, 교육,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지역민 30여 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장·터’를 구성·운영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의 가치 실현을 위한 60만 읽기에 더 많은 지역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12. 10.에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인권문화한마당을 개최,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주력하였다.

특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위원회 중점 분야 중 하나인 ‘다문화 존중,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부산지역 거주 이주노동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7년 인권조례 관련 토론회에 이어 지역 내 사회적 약자, 소수자 관련 조례의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 친화적 조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 중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실태조사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발대식 2008. 10. 9.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 2008.10.22.

〈 2009년 〉

2009년 4월, 직제개편과 함께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진정사건 조사권이 각 지역 인권사무소로도 이양되어 지역 처리사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교정 및 다수인보호시설 각

영역 전문 조사관을 배치하고 면전진정 및 실지조사 처리 효율화 방안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2009년 3월 22일 「정신보건법」이 개정 시행되어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 내 정신보건시설 100여 곳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간 운영해오던 지역별 인권 강사단을 분야별로 재편하여 지역 전문가(인권강사) 중심의 장애인 차별인식 개선 교육, 취약계층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08년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이어 부산광역시, 부산대학교, 부산발전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이주노동자의 주거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2006부터 추진해온 부산, 울산, 경남 시민 인권영상공모전은 많은 관심 속에 4회째를 맞았고, 위원회 공모전사업 재편에 따라 2010년에는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UCC공모전’을 부산인권사무소 주최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센터 문화프로그램 접근성 모니터링(12. 23)



인권신장 등을 위한 협약식(12. 18)

〈 2010년 〉

지역의 인권의식 신장,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전 국민에 대한 균질한 인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역 인권사무소를 개소한 지 5년이 되었다.

지난 5년 동안 사무소는 2만여 건이 넘는 진정접수 및 상담, 민원, 안내를 처리하였으며 3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50여 회 이상 지역 내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인권 행사를 추진하였다. 2010년에도 3,835건의 진정·

상담·민원·안내를 처리하였으며, 7,842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70여건의 각종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개소 직후 진정사건에 대한 본부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2006년 9월 구금시설 진정사건 조사권 이양, 2008년 4월 다수인보호시설 조사권이 이양됨에 따라 2010년 12월 말 현재 1,391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인용사건은 권고 63건, 징계권고 1건, 합의종결 18건에 이르러 진정사건 권리구제 업무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교육, 홍보, 협력분야에서도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등은 전국 공통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체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서 지역 사무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활동에 있어서도 언론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활동, 각종 캠페인, 지역 특색을 반영한 활동과제 발굴 등 모범적인 활동을 보였다.

이러한 지역 인권사무소의 성과는 지역 인권사무소의 역할을 정립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개소 5년을 맞아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밑거름이 되었다.



청소년 노동인권강사 양성 기본과정(6. 25. - 26)



지역민과 함께 하는 인권문화한마당(12. 10.)

〈 2011년 〉

지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긴급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균질한 인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인권사무소를 개소한 지 6년이 되었다. 지난 6년 동안 인권사무소는 2만 4,000여 건의 진정 및 상담·민원·안내를 처리하였고, 4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권순회상담 및 인권문화제 개최 등을 통해 지역 내

기관·단체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06년 9월 구금시설, 2008년 4월 다수인보호시설 조사권이 인권사무소에 이양됨에 따라 2011년 12월 말 현재 1,821건의 진정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권고 80건, 고발 및 징계권고 4건, 합의종결 26건을 처리하여 권리구제 업무가 안정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 홍보, 협력 분야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 정신보건 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정보인권 업무 등 전국 단위 공통으로 진행한 사업에서도 지역사무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특히 지역 활동에 있어 인권단체 간담회, 청소년노동인권캠프,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활동을 확대 하면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활동과제를 발굴하는 데도 노력하였다.



부산국제실버엑스포 노인인권상담(6.20.)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5.24.)

〈 2012년 〉

2012년 부산인권사무소는 개소 7년을 맞아 부산·경남·울산 지역의 인권 지킴이로서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인권의식의 확산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해마다 증가하는 진정·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구금시설 수용자와 정신보건시설 생활인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에 나서기도 하였다.

지난 7년간 부산인권사무소는 총 3만3,000여 건의 인권상담(진정접수·안내·민원 포함)을 처리하였다. 이는 부산인권사무소가 해마다 4,000여 건이 넘는 인권상담을 진행 하며 명실 공히 지역 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산인권

사무소가 관할하는 지역에는 800만 명의 인구, 그리고 인권침해 및 차별 관련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피진정기관이 산재한다. 그만큼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면전진정 신청의 경우, 전년 대비 23% 증가한 977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전진정 접수 후 처리 까지 약 12일의 소요일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시설 수용자에게 신속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상담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관들이 노력한 결과였다. 또한 2012년 부산 인권사무소는 피진정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진정기관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였고, 관내 군 영창과 경찰서 유치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 내 진정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수용자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인권교육은 인권 외연 확대, 지역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권 상담과 마찬가지로, 인권교육에 대한 수요도 해마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 부산인권사무소는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교육 등 법정시간이 정해진 인권교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규적인 인권교육 등의 경우에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사회복지사협회,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인권교육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하였다.

또한 개관 3주년을 맞이한 인권상설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 인권홍보 거점으로서 인권전시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인권문화공간을 제공하였다. 2012년은 부산인권사무소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부산·경남·울산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간 한 해로 평가된다.



인권교육



물만골역 인권전시관 운영

〈 2013년 〉

2013년 10월 11일 개소 8주년을 맞이한 부산인권사무소는 인권상담과 진정접수,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면전진정 접수, 구금·보호시설 내 진정함 관리, 긴급한 인권침해·차별 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교정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에서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인권교육·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인권 공동체 확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산인권사무소가 관할하는 지역은 부산·경남·울산 지역으로, 관할 지역에는 약 771만 명의 인구(전국 대비 16%)가 거주하고 있다.

부산인권사무소가 그동안 지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 결과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진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기관·학교·시민단체에서의 인권 교육 수요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부산·경남·울산 지역의 인권 지킴이로서 부산인권사무소는 2013년도에도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추진하였다.

지난 8년간 부산인권사무소는 총 3만 7,000여 건의 인권상담(진정접수·안내·민원 포함), 7,300여 건의 면전진정, 3,200여 건의 진정사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다수인 보호시설(정신보건시설) 수용자의 진정사건 접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3년에는 다수인보호시설 진정사건 수가 처음으로 교정시설 진정사건 수를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부산인권사무소는 2011년 430건, 2012년 733건, 2013년 691건의 진정사건을 조사한 가운데, 2011년 약 81일이던 진정사건 처리 평균 소요일을 2012년에는 약 69일, 2013년에는 약 62일로 단축시켜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였다. 또한 부산·경남·울산 소재 정신보건시설의 진정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수용자의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3년은 밀양 송전탑 건립 주민 반대 집회 현장,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집회 현장 등 관내에서 긴급한 인권 현안이 많이 발생한 해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해당 현장을 방문해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인권지킴이 활동, 기초조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인권 현안에 민첩하게 대응하였다. 지역사무소의 소규모 인력 구조상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진정사건 조사 등 일상 업무를 병행하는 데 애로점이 있으나 조사관들의 노력으로 연간 업무 계획을 충실히 달성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 관할 지역 내 인권교육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 제정 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수요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인권 및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지속적인 교육 수요 증가, 시민의 인권 의식 성장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에는 총 348회, 2만 153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129회, 4,572명이 증가한 수치로, 부산인권사무소는 사회복지사협회,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인권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함과 동시에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인권 전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지역 인권 홍보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고, 장애인·노인·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 2014년 〉

2014년 10월 11일 개소 9주년을 맞이한 부산인권사무소는 그동안 지역민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부산·경남·울산 지역의 인권 지킴이로서 2014년도에도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추진하였다.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 교육(4.22.)



이주민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인권음악회(10.2.)

지난 9년간 부산인권사무소는 약 2만 3,833건의 인권상담, 1만 2,196건의 민원/안내 처리, 8,000여 건의 면전진정, 5,000여 건의 진정사건을 처리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2012년 733건, 2013년 691건, 2014년 709건의 진정사건을 조사한 가운데,

2012년 약 69일이던 진정사건 처리 평균 소요일을 2013년에는 약 62일, 2014년에는 약 50일로 단축시켜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였다. 또한 부산·경남·울산 소재 정신보건 시설의 진정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수용자의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2014년은 2013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립 주민 반대 집회, 부산지역 장애인단체의 시청 앞 농성현장 방문 등 관할 구역 내 긴급한 인권 현안이 많이 발생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해당 현장을 방문해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인권지킴이 활동, 기초조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인권 현안에 민첩하게 대응하였다. 인권사무소의 소규모 인력 구조상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진정사건 조사 등 일상 업무를 병행하는 데 애로점이 있었으나 조사관들의 노력으로 연간 업무 계획을 충실히 달성하였다.

한편 관할 구역 내 인권교육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 제정 후 공무원 및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학교 내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수요가 증가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산 인권사무소는 2014년 총 477회, 3만 441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는데, 전년 대비 129회, 1만 288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부산인권사무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복지사협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권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인권전시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 인권 홍보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고, 장애인·노인·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문화한마당



장애인차별금지법 6주년 기념토론회(4.11)

〈 2015년 〉

부산인권사무소는 2015년에 지역 내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 지역민의 인권감수성 제고와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인권친화적인 문화행사를 비롯하여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인권단체 등과의 소통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개소 10주년을 맞아 ‘함께 걸어온 人(사람), 함께 누리는 權(권리)’라는 제하로 ‘지역인권 돌아보기 10년, 내다보기 10년’ ‘100분 토론회’를 개최, 10년간의 진정사건 처리, 인권교육, 대외협력활동 등 을 돌아보고 성찰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고 인권의식을 확산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다. 또한 지역의 인권 지킴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였다.

2015년 진정사건은 총 785건을 처리하고, 인용 67건(권고 22건, 고발 1건, 합의종결 44건)을 이끌어내어 2013년 52건, 2014년 65건에 비해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율을 높였다. 이는 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매월 정기적으로 사건토론회를 진행하고, 부산·경남·울산 소재 정신보건시설의 진정함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시설수용자의 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관할구역 내 인권교육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인권교육센터를 개관(2015. 4. 21.)하여 장애·정신장애·이주·아동 분야의 인권교육 전문 강사단 양성과정 운영, 인권특강, 방문 교육 등 총 387회, 2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경상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2015. 12. 2.),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찾아가는 인권특강’을 실시하였으며, 부산·울산광역시교육청과 협력해 학생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인권전시관(체험관)을 운영해 장애·북한아동·발달장애·청각장애 등 다양한 분야의 기획 전시회를 총 9회 개최하고, 지역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전시 관람, 인권체험장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지역민의 인권의식 증진과 홍보를 위해 경남 △창원NC 다이노즈 프로야구단과의 인권 캠페인 사업, △시민과 함께 달리는 ‘울산인권마라톤’ 행사, △인권활동가와 함께 하는 ‘인권토크콘서트’, △인권순회상담, △세계인권선언 기념 찾아가는 인권문화행사,

△인권도서관 부산분관 설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노인인권지킴이단 모니터링 사업, △지역 인권 현안 모니터링, △인권단체 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지방자치단체와의 인권 워크숍 개최 등 지역민과 지역 인권 유관단체와의 폭넓은 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권 행사를 추진하였다.



위원회-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 2016년 〉

2016년 3월 인권사무소의 조사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지역민에게 알리기 위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조사권 확대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하였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신규 조사 영역에 대한 조사관들의 조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역량강화 프로그램(조사관 사건토론회)을 운영하였다.

관할 구역 내 인권교육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사회복지·노인·영유아 분야의 인권교육 전문 강사단을 양성하고, 470여 회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2015년 12월 경상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2016년 8월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학교분야 인권증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초·중·고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확대, 실시하였다.

2016년 9월에는 인권전시관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해 전시관의 이미지를 높이고, 다양한 주제의 인권작품 기획전을 개최하였다. 또한 지역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NC 다이노스 프로야구단과의 인권 캠페인, △울산인권마라톤 인권 캠페인, △세계인권선언

기념 찾아가는 인권문화행사, △인권토크콘서트, △시민인권강좌, △인권영화 상영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 밖에도 △인권단체 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 △지방자치단체 인권 업무 담당자 워크숍 등 인권단체·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권 행사를 추진하였다.



프로야구와 함께하는 인권캠페인



장애인차별예방 현장 모니터링

〈 2017년 〉

부산인권사무소는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제10회 복지재활시니어전시회에서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상담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8월 10일 창원 마산야구장에서 ‘프로야구와 함께하는 차별예방 인권캠페인’, 8월 19일 부산 광안리 해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캠페인, 11월 6일 울산인권마라톤대회에서 인권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세계인권선언 69주년을 기념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를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부산교통방송을 통해 인권침해·차별 결정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라디오 인권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부산과 울산에서 △찾아가는 인권 영화상영회, △대안학교 학생 대상 인권사진교실,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간담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부산인권전시관은 2017년에 ‘주거와 인권’을 주제로 한 사진전 〈파괴된 공동체〉와 드로잉 작품전 〈살아가기 위한 : 거주와 생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시화전 〈세상에 외치는 소리〉와 공예작품전 〈편견과 소통〉, 〈청소년 인권 단편시전〉, 역사와 인권을 주제로 한 사진전 〈귀환〉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발굴·유치하였다.

2017년 인권전시관 방문객 수는 총 9,134명으로 2016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방문객 중 1,354명(학생,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총 62회에 걸쳐 인권교육을 제공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공동으로 부산 지역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총 159개교)의 학생생활규정, 선도·징계 규정, 학생회 규정 등 약 780개의 개별 규정을 전수조사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학교생활규정에서는 두발, 복장, 휴대전화 사용, 이성교제, 교외활동과 관련하여 개성 발현권, 행복추구권, 사적 자치 영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지적되었으며, 선도·징계 규정에서는 징계 사유 및 기준의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양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이 다수 발견되었다. 부산 인권사무소는 총 3,967개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개정을 요청하였고, 이 중 95.8%가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부산인권사무소는 지역의 인권 현안 논의와 업무협력을 위해 7~8월에 장애, 이주, 권리구제(법률조력), 인권교육 등 각 분야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1월에는 2018년 업무계획 수립을 앞두고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24개 단체 및 기관에서 42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거제시사회보장협의체와 공동으로 7월 14일부터 15까지 거제자연휴양림에서 거제 지역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동가들의 인권 전문성을 키우는 데 기여하였다.



방문객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편견과 소동> 기획전 개막 행사

〈 2018년 〉

부산인권사무소는 지역 내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혐오와 차별 철폐’를 주제로 △프로야구와 함께하는 인권캠페인(9월 마산야구장), △울산인권마라톤대회 인권캠페인(11월 울산 태화강 둔치), △부산문화다양성축제 인권캠페인(5월 해운대 구남로 광장), △세계인권선언의 날 인권캠페인(12월 부산 서면 광장)을 펼쳤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2018년 7월에는 부산시청 전시실에서 〈장애인 인권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장애인을 주제로 한 사진작품 총 28점(사진작가 김중만, 마르쿠스 마르세틱)을 전시하고, 도슨트 프로그램(전시작품 해설)을 운영하였다. 전시실 중앙에는 약 200종의 어린이 인권도서를 병행 전시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등 인권문화교육 복합공간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인권작품전시회, 인권영화상영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인권특강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부산인권전시관은 2018년에 세월호 참사 4주기 사진전, 환경과 인권 사진전, 위원회 결정례와 인권상당사례를 시각화한 일러스트 작품 프로젝트 등을 기획·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언론 매체의 주목을 받았다.

2018년 인권전시관 방문객 수는 총 1만2,464명으로, 개관 이후 방문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730명(학생, 장애인, 경찰 및 의경,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총 86회에 걸쳐 인권교육을 제공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학교규칙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학교규정 개정을 유도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부산지역 중학교(총 174개교)의 학교규칙을 전수 검토하고, 567개 규정 내 인권침해 요소가 담긴 3,500여 개 조항에 대하여 각 학교에 개정을 권장하였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업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스킨십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인권 업무 강화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광역단체 실무 부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인권현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 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과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인권행정 및 정책 실행에 관한 실무자들의 이해도와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2018년 12월에는 부산광역시와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경남지역 인권옹호자 대상 인권워크숍을 개최하여 활동가들의 역량강화의 장을 마련하고, 인권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사회와 상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지역 내 권리옹호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조사지원 및 전문가 자문 등) 체계를 강화하여 진정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의 실질적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인권보호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함께 2018년 5월 31일 ‘인권옹호네트 워크’를 발족하였다.



학교규칙 모니터링단 워크숍(4. 11.)



부산·울산·경남 인권옹호네트워크 발족

〈 2019년 〉

부산인권사무소는 지역 내 혐오차별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역적 공론화 및 대항 문화 확산을 위해 연중 ‘혐오와 차별 철폐’를 주제로 홍보 사업을 추진하였다.

장애인 차별과 혐오문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4월에 개최하였으며, 특히 5월 17일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및 5월 21일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에 맞춰 혐오차별을 주제로 부산MBC 라디오 <지방시대 부산> 출연, <한국사회 혐오표현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부산 문화다양성 페스티벌에서 인권 캠페인, 인권강사단 대상 혐오와 차별의 이해 연구 워크숍 운영 등 일련의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11월 울산지역 혐오

차별 대항문화 조성 인권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효과를 높였다.



부울경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혐오차별 대항문화 조성 인권 캠페인

또한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혐오차별 예방 인권문화 콘서트, 마주 캠페인 홍보 부스 운영, 인권선언 조항 일러스트 포스터 전시회, 영화 <메기> 상영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였다.

부산인권전시관은 2019년에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사진전 등을 통해 지역 내 인권 존중의 가치와 인권 담론을 이끌어내고, <아동인권도서 원화전> <청년장애인 미술 공예전> 등을 통해 아동인권·장애인권·여성인권 등 구체적 인권 분야를 조명하는 전시를 기획·운영하여 지역주민과 언론매체의 주목을 받았다.



발달장애인 미술 작품전



발달장애인 미술작품전 개막식

2019년 부산인권전시관 방문객 수는 총 1만 2,450명으로, 기념 스탬프 제작·활용 및 스크래치 페이퍼 부스 운영 등 시민참여형 홍보 이벤트를 활성화하여 개관 이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학생·장애인·군인·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등 883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부산·울산·경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권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협의회’(3월), 광역교육청과 함께 ‘인권교육협의회’(4월)를 신설하고,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노하우를 공유하며 인권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인권침해 당사자의 권익을 옹호해야 할 일선 경찰관의 인권증진과 교육을 위해 ‘경찰청 인권교육협의회’를 6월에 구성하여 ‘경찰을 위한 장애 분야 업무지원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인권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아동·노인·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인권옹호 네트워크’를 운영하였으며, 인권·시민사회단체와도 정기적 의견수렴 창구인 ‘소통협력위원회’(9월)를 통해 분야별 활동가들과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부울경 시민사회 소통협력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



부울경 경찰청 인권교육협의회

이러한 내외부 협력 채널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과제가 사무소 차원을 넘어 지역의 인권정책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민·관·시민의 협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열린 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업무 담당자와 의원·시민이 함께하는 〈부산인권정책포럼〉을 부산광역시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2019년 12월에 발족하였다.



한국사회 혐오표현 진단과 대안 마련 토론회



제1차 부산인권정책포럼

〈 사진으로 보는 2020년 〉

2020년 부산인권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외협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울산 시민단체 간담회, 부울경 지자체 인권정책협의회, 부울경 경찰청·교육청 인권교육협의회, 정문자 상임위원 시민단체 간담회, 제2기 부울경 시민사회단체 소통협력위원회 발족, 부울경 권리옹호 네트워크 회의, 부산인권정책포럼, 울산지역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 개최 등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혐오차별 대응 및 평등법 제정을 위한 지역 시민사회단체 설명회 개최 및 지역내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식지이용 인권지식 코너 연재, 매월 혐오차별관련 자체 블로그 이벤트 실시, 부산라디오방송 인터뷰, 부산시민공원내에 ‘평등벤치’를 설치하고, 부산 인권전시관에서는 「UN인권포스터저마다의 빛깔로」, 「제주4.3 수형인 사진전」, 「노동 인권 카툰전」, 「모두를 위한 평등」 전시회를 운영하였다. 인권교육에 있어서도 대학인권 센터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경찰, 교사 및 학부모대상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울산 지역 인권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다.



울산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부울경 교육청 인권교육협의회



부울경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



부울경 광역지자체 인권정책협의회



부울경 시민사회단체 평등법 추진 설명 간담회



부산인권정책포럼



울산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



제2기 부울경 시민사회단체 소통협력위원회 위원 위촉



형제복지원 회고전



모두를 위한 평등 전시회

4. 부산인권사무소 진정 등 접수 처리 현황

가.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2005. 10. 11. ~ 2020.9.30.)

연도	접수	인용						미인용				조사중지		합계
		소계	권고	고발	징계 권고	의견 표명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소 계	조사 중지	
2009	542	41	31				10	488	236	6	246	0		529
2010	501	36	27		1		8	450	270	1	179	4	4	490
2011	469	28	17	3			8	402	220	1	181	0		430
2012	723	51	18				33	681	397		284	1	1	733
2013	693	52	13		1		38	636	320	1	315	3	3	691
2014	765	65	18	1			46	644	378	1	265	1	1	710
2015	729	67	22	1			44	720	460	1	259	0		787
2016	859	20	12				8	841	562	9	270	1	1	862
2017	889	27	25				2	850	582	13	255	0		877
2018	697	24	19				5	671	464	7	200	0		695
2019	777	20	16		1		3	694	416	10	268	0		714
2020	577	23	18		1	2	2	502	374	1	127	3	3	528
합계	8,222	452	236	5	4		207	7,583	4,679	51	2,849	9	9	8,045

나.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현황(2005. 10. 11. ~ 2020.9.30.)

연도	신청	종결처리								평균 소요일 수
		소계		진정접수		상담종결		철회		
2005	88	59	100%	16	27.1	28	47.5	15	25.4	13.0
2006	762	775	100%	137	17.7	514	66.3	124	16.0	9.1
2007	931	935	100%	176	18.8	605	64.7	154	16.5	7.5
2008	1,142	1,132	100%	204	18.0	780	68.9	148	13.1	7.1
2009	1,046	1,049	100%	256	24.4	614	58.5	179	17.1	6.5
2010	766	776	100%	156	20.1	476	61.3	144	18.6	7.2
2011	797	782	100%	169	21.6	431	55.1	182	23.3	10.3
2012	977	978	100%	243	24.8	498	50.9	237	24.2	12.7
2013	867	852	100%	240	28.2	361	42.4	251	29.5	16.7
2014	645	647	100%	190	29.4	277	42.8	180	27.8	16.1
2015	557	565	100%	144	25.5	208	36.8	213	37.7	16.6
2016	566	541	100%	115	21.3	213	39.4	213	39.4	17.8
2017	676	676	100%	146	21.6	325	48.1	205	30.3	19.0
2018	574	604	100%	116	19.2	280	46.4	208	34.4	18.2
2019	504	502	100%	90	17.9	192	38.2	220	43.8	17.8
2020	447	425	100%	28	6.6	224	52.7	173	40.7	24.7
총누계	11,345	11,298	100%	2,426	21.5	6,026	53.3	2,846	25.2	12.6

다. 상담 신청 및 처리현황(2005. 10. 11. ~ 2020.9.30.)

연도	상담종결	타기관안내	진정예정	재상담예정	진정접수	기타	합계
2005	68	4	8	18	19	-	117
2006	752	84	88	194	77	16	1,211
2007	856	138	156	183	97	23	1,453
2008	994	172	90	176	128	12	1,572
2009	800	159	70	113	274	20	1,436
2010	984	106	64	190	272	15	1,631
2011	1,121	77	49	158	266	81	1,752
2012	1,657	242	70	132	414	159	2,674
2013	1,297	258	49	155	428	108	2,295
2014	892	230	45	82	352	70	1,671
2015	982	95	53	86	356	13	1,585
2016	1,181	157	32	138	367	85	1,960
2017	1,370	248	36	136	263	47	2,100
2018	1,052	237	60	115	293	23	1,780
2019	1,354	243	101	138	286	47	2,169
2020	942	259	143	38	209	54	1,645
합계	16,302	2,709	1,114	2,052	4,101	773	27,051

라. 민원 신청 및 처리현황(2005. 10. 11. ~ 2020.9.30.)

연도	합계	우편/팩스	기타	인터넷	신문고
2005	5(100.0)	4(80)	1(20)	0	0
2006	80(100.0)	77(96.3)	3(3.8)	0	0
2007	108(100.0)	108(100)	0	0	0
2008	190(100.0)	190(100)	0	0	0
2009	145(100.0)	144(99.3)	1(0.7)	0	0
2010	109(100.0)	109(100)	0	0	0
2011	139(100.0)	139(100)	0	0	0
2012	70(100.0)	70(100)	0	0	0
2013	80(100.0)	79(98.8)	1(1.3)	0	0
2014	247(100.0)	246(99.6)	1(0.4)	0	0
2015	105(100.0)	105(100)	0	0	0
2016	157(100.0)	157(100)	0	0	0
2017	193(100.0)	185(95.9)	8(4.1)	0	0
2018	213(100.0)	207(97.2)	4(1.9)	2(0.9)	0
2019	218(100.0)	218(100)	0	0	0
2020	255(100.0)	250(98)	0	4(1.6)	1(0.4)
합계	2,314(100.0)	2,288(100.0)	19(100.0)	6(100.0)	1(100.0)

부산인권사무소에 바란다

송정문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한아름 (이주민과 함께 사무처장)



15주년을 맞이한 인권위 부산사무소에 바란다!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기를

송정문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의 개소 1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부산사무소가 개소되면서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의 인권단체 간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의 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권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토록 바랐던 장애인차별 조사를 지역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게 된 이후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서울)에 차별진정 접수 이후 약 6개월에서 1년여 동안 대기상태로 기다려야 했던 지역 사건들이 그나마 신속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여 매우 기쁩니다.

또한 2017년도까지 부산에서만 개최되어 왔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기념 토론회가 경남에서 개최되면서 토론회 장의 좌석이 부족했을 만큼 큰 관심이 모아졌던 2018년도를 기억합니다. 그만큼 경남지역에서는 인권이슈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그러한 논의자리가 별로 없다보니 인권위 부산사무소의 더 많은 지역 활동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도 경남지역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종 토론의 장을 더 많이 개최하여 주시고 개개인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2005년 10월. 부울경을 관할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가 개소되면서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아쉬워했던 당시가 떠오릅니다. 경남지역에 별도의 사무소가 개소하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산사무소의 개소 15주년을 맞이한 지금에도 부울경 전체를 관할하는 부산사무소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노동지청만 해도 경남에는 4개소나 설립되었는데 말입니다.

2017년도에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창원에 터를 마련하여 경남전역의 학대 피해장애인을 지원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은 경상남도나 너무 넓다는 것입니다. 기관 사무소가 있는 창원에서 경남 내 외곽 지역으로 지원을 나갈 때면 1건 지원에 꼬박 하루가 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차별대응과 인권보호 및 권고 이행사항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며 발로 뛰어야 하는 인권위 부산사무소가 부울경 전체를 감당한다는 건 결국 인권침해의 적극적 모니터링보다는 접수사건 대응이나 인권교육 위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의 설립목적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도 인권위 지역사무소 내지 출장소의 설치를 목표로 삼아 그 가교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역 권익 옹호기관인 저희의 역할 또한 필요하리라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와의 협력체계가 공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소 15주년, 부산인권사무소에 바란다.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개소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역사무소가 개소하던 2005년을 떠올려봅니다. 인권을 입에 담기에도 용기가 필요하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인권교육조차 불온한 것으로 치부되던 시기에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가 개소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역사회에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열악한 인권역량이었지만 부산인권사무소와 함께 인권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어느덧 15년이 지났습니다. 인권개념조차 생소하게 여겨졌던 것에 비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팔목상대하다 평가될만합니다.

인권 사무는 국가 사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지방자치단체들조차 지자체의 인권 행정을 위해 전담부서를 배치하고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등 인권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제정 권고가 끌어낸 성과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지역사회에까지 보장체계가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인권친화적인 사회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더욱 구체적이고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한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저항은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는 이유입니다. 인간의 존엄함을 확인하는 것,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옹호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흐름입니다. 인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차별 대응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부산인권사무소 역시 지역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역 공론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인권향상 및 보호,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위해 2005년 10월 부산과 광주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2007년 대구, 2014년 대전, 2017년 강원도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제주에 출장소를 개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역할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산인권사무소 역시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권상담

둘째, 경찰, 국가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정보원, 검찰, 군 제외),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구금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 조사·구제

셋째, 인권교육

넷째, 인권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홍보

다섯째, 기타 인권체험관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업무 추진

먼저, 인권교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인권교육의 확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가인권기구로서의 공신력과 힘이 있었기에 인권교육을 공식화하고 급속도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구로서 내재한 기본적 한계로 인해서 인권에 대한 협소한 해석과 그에 기초한 인권교육 내용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둡니다.

부산인권사무소는 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권강사양성과정, 인권감수성향상과정, 법적으로 의무화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인권특강 등을 실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실시한 인권교육은 총 774회(25,282명)에 이릅니다. 유형별로 보면 인권강사양성과정 4회 75명, 인권감수성향상과정 22회 555명, 의무교육 12회 1,093명, 방문교육 47회 883명, 인권특강 689회 22,676명입니다. 인권특강을 통한 인권교육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타 지역사무소와 비교해보면 부산인권사무소가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의무교육, 방문교육, 인권특강 부분에서 거의 2배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인권교육을 부산인권사무소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판단해 봐야 합니다.

부산인권사무소의 역할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인권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권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요를 창출하여 부산울산경남지역 인권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아시는 바처럼 인권교육은 공공부문과 학교를 넘어서 지역주민에 대한 영역까지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업과 인권에 대한 요구까지 가세하며 인권교육은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인권교육 인프라는 매우 열악합니다. 교육을 추진할 기본적인 역량조차 갖추지 못한 지역도 허다합니다. 인프라 구축이 절실합니다.

또한 의무교육과 인권기본조례를 통해서 인권교육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부문과 학교 등 일부 영역에서는 제한적으로 추진될 뿐입니다. 인권교육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조건을 성숙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부산인권사무소가 지역의 인권교육 확산에 앞장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한된 영역에서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의 내용도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전개되면서 기초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의 법제화는 이러한 교육 현실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절실히 요구됩니다. 하지만 인권교육 제도화의 핵심인 「인권교육법」은 여전히 표류 중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인권교육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교육법」의 제정과 함께 ‘인권교육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인권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유엔의 인권교육프로그램 및 각종 캠페인 등 최소한의 국제사회 인권 교육 요구에 호응하는 것으로 대상별, 단계별 인권교육의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보다 전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권관련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홍보입니다.

부산인권사무소에서는 인권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행정이란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민간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들 간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민관거버넌스 구축과 인권 행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4년여 전에 시도된 사례가 있었지만, 실무를 담당 한 부산인권사무소의 무관심(?)으로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류와 협력은 신뢰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체 구성과 회의횟수보다는 사업의 목적에 걸맞은 실질적인 노력이 요청됩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통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벌써 2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구성 시 각 지역별 부문별 안배를 고려하고 회의를 최대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운영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권위원회 활동 보고와 참가한 단체의 동향 정도를 공유하는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지역 사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결의하거나 부산인권사무소의 적극적 대응을 끌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과연 의지의 문제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인권체험관(인권전시관)과 관련하여 제안합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유일한 체험관이 부산에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지역인권사무소가 모든 광역지자체에 설치될 수 없다면 최소한 인권체험관(인권전시관) 같은 거점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떨지 진지하게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역거점 공간을 마련하여 인권교육의 확산과 더불어 지역 인권정책의 소통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를 했던 어느 시민이 하시는 말이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스럽다’였습니다. 전화하는 시민은 한 줄기 희망에 기댄 채 전화를 하는 겁니다. 진정의 내용이 인권문제이든 아니든 최소한 위로가 필요한 시민입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뭔가를 다룰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감도 더욱 심하겠지요. 인권위원회는 그래서 공무원조직과 분명 달라야 합니다.

개소 15주년을 맞이하는 축하의 자리임에도 결국 쓴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이 때로는 과감하게 협력하고 때로는 날선 목소리로 매서운 비판을 꺼리지 않았기에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가 지금과 같이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을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추구하는 ‘인권의 가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이며 시민들의 변함없는 환호와 지지를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개소 15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산인권사무소에 바란다

한아름 (이주민과 함께 사무처장)

지역사회 인권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

Ⅰ 발제 Ⅰ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실효적 이행 방안 - 부산광역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정귀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실효적 이행방안

부산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정귀순, 부산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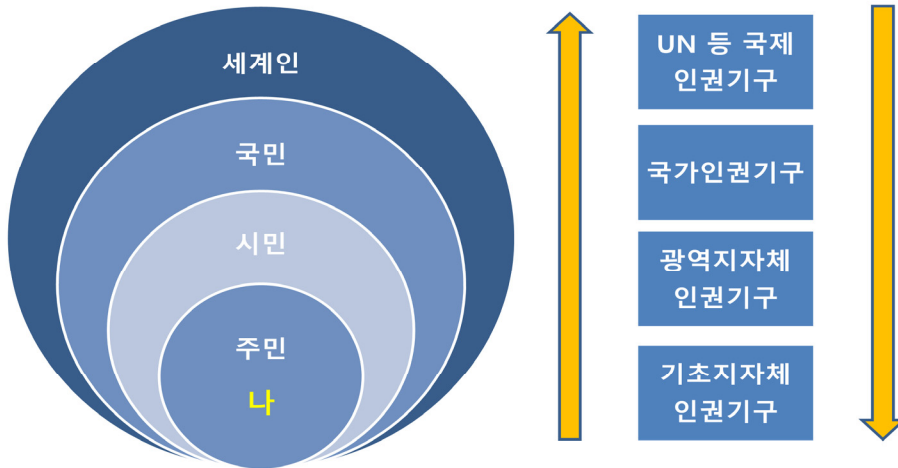
2020년 10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토론회

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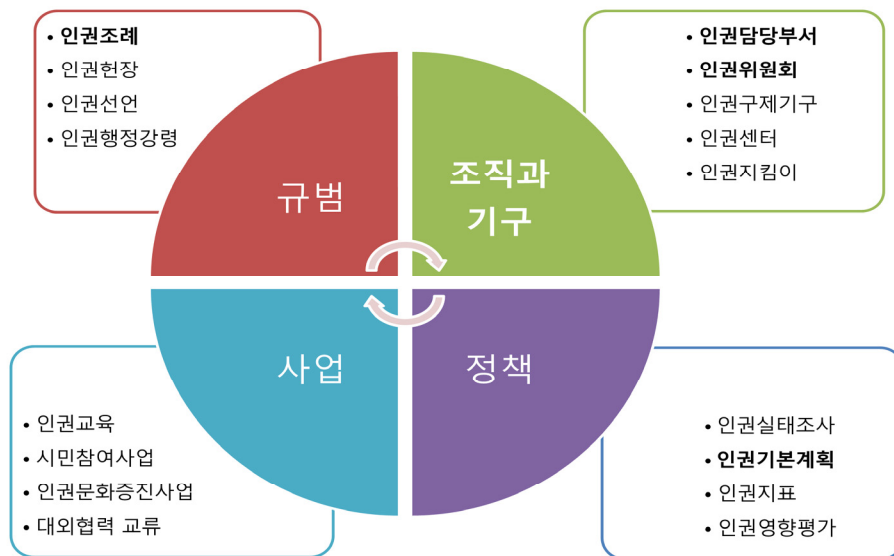
- I.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다
- II. 제2차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
- III. 주요 내용
- IV. 의의와 과제



인권 거버넌스를 구축하다!



인권제도의 범주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다



1.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 국가인권기본계획(NAP) :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2012.2.22 제정 / 2020.01.01 개정)

제2장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제4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
 2. 여성, 아동, 노인 등 인권취약계층의 분야별 추진 목표 및 전략
 3.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의 목표

- 인권관련 법·제도·정책·관행 등을 개선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지자체의 정책·사업을 해석하고 통합하는 종합적인 실행계획으로써 인권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인권종합계획
- 지자체의 인권상황과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비전,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등을 제시
- 인권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되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프라구축, 지역의 인권친화적 문화형성, 지역 인권단체 및 인권도시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목적
- 각 영역별로 시기별 이행계획과 목표, 실효적 이행전략과 수단을 구체적으로 나타냄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



3. 추진 과정

준비단계	개발단계	이행단계	모니터링단계	평가단계
• 법적근거마련 • 기획 • 인권실태조사 • 현황과 과제 파악	• 기본계획수립 단계 • 정책과제개발 및 우선순위 부여 • 공청회, 지역 인권단체와 협의, 유관부서와 협의	•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집행 • 인권정책협의회, 이행점검회의 정례화 • 시민 및 공무원 인권교육 병행	• 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상황변화 및 지역주민 평가 의견 반영하여 기본계획 실행조정	•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시행 및 효과 평가 • 차기 기본계획 수립 준비 단계 • 새로운 분야 발굴, 기초조사 수행

<한국인권재단, 2014>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기본조례 및 주요 내용

제정순	자치단체	인권 기본조례 명칭	제정 일	조례에 규정된 인권제도화 주요 내용
1	광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09. 11.16	위원회, 인권지원센터, 시민인권실천단, 인권기본계획,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인권지표·지수, 인권헌장, 인권백서, 인권올부즈맨
2	경남	인권 보장 조례	'10. 03.25	위원회, 인권센터, 인권기본계획, 인권교육
3	전북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0. 07.09	위원회, 인권센터, 인권기본계획, 인권지수, 인권교육, 인권지킴이단
4	부산	인권기본 조례	'12.02.22	위원회, 인권센터, 실태조사, 인권기본계획, 보호관,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시민인권모니터단
5	충남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12.05.10 (1805페이지 19101 재제정)	위원회, 인권센터, 인권기본계획, 인권교육, 인권지킴이단, 인권지수, 인권영향평가, 인권보호관
6	전남	인권 기본 조례	'12.07.15	위원회, 인권지수, 인권기본계획, 인권영향평가, 명예인권지기, 인권올부즈맨, 인권교육
7	서울	인권 기본 조례	'12.09.28	위원회,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민인권보호관, 인권기본계획, 인권센터, 인권교육, 인권지표·지수, 인권헌장, 인권영향평가, 인권정책회의, 시민인권배심회의
8	울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2.10.11	위원회, 인권센터, 인권기본계획, 실태조사, 인권보고서, 인권교육
9	대전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12.11.02	위원회, 인권센터, 인권기본계획, 인권교육, 시민인권보호관
10	강원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3.06.07	위원회, 인권기본계획, 인권센터, 인권교육, 인권보호관
11	경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3.08.05	위원회, 인권기본계획, 인권센터, 인권교육, 인권보호관
12	경북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3.11.11	위원회, 인권기본계획, 인권센터, 인권교육
13	충북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3.12.27	위원회, 인권기본계획, 인권센터, 인권교육, 인권보고서
14	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4.05.27	위원회, 인권기본계획, 인권센터, 인권교육
15	세종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4.09.22	위원회, 인권기본계획, 인권센터, 인권교육
16	제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5.10.06	위원회, 인권기본계획, 인권센터, 인권헌장, 인권교육, 인권보고서, 인권영향평가
17	인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9.01.07	위원회, 인권기본계획, 인권센터, 인권교육, 인권보고서, 인권보호관, 인권영향평가

부산시 구군 인권조례 및 인권위원회 현황

구 군	조례	제 개정	위원회 구성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중 구	부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2019.03.27	○	○ (2019~2023)
서 구	-	-	-	-
동 구	-	-	-	-
영도구	-	-	-	-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4.12.16	○	○ (2020~20204)
동래구	-	-	-	-
남 구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	2014.12.29	×	-
북 구	부산광역시 북구 인권 증진 조례	2016.06.22	×	2021 예정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2018.02.22	○	○ (2019~2023)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 증진 조례	2015.02.17	×	-
금정구	-	-	-	-
강서구	-	-	-	-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5.07.20	×	○ (2019~2023)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 증진 조례	2018.05.15	×	2021 예정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5.10.22	×	-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6.03.25	○	○ (2018~2022)

2차 부산시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



제2차 인권기본계획 수립1 (연구용역 발주)

- 2019.4 제2차 인권정책기본계획 연구용역 발주 ((사)인권정책연구소)
- 2019.5 착수보고회
- 2019.6 부산시민인권의식설문조사 (1,000명)
- 2019.6 부산시 공무원 업무관련 인권의식조사 (2,321명)
- 2019.9 시민인권교육 및 라운드테이블 운영
- 2019.9.11 중간보고회
- 2019.12 인권대토론회 / 최종보고회
- 2020.1 연구보고서 제출



✓ 기대에 미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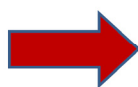




제2차 인권기본계획 수립2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

- 2019.8 '인권현장을 만나다' 오픈포럼 개최
- 2019.10 정책제언집1 <지역과 현장의 인권> 발간
- 2020.2~5 인권과제 준비 (정책소위원회 구성 및 14개 기관과 단체, 전문가 자문)
- 2020.5~7 부서협의 진행 (16개 부서 총 12회, 120여개 과제 협의 진행)
- 2020. 8.30 인권위원회 심의

인권기본조례 제10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요청) 근거



- ✓ 부산의 특수성을 담는다 (지역성)
- ✓ 인권현장의 목소리를 담는다 (현장성)
- ✓ 실행·실천 가능한 기본계획을 만든다 (실천성)
- ✓ 인권행정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만들기



▲부산인권정책포럼 발족(인권정책발굴)

분 야	참여기관·단체	분 야	참여기관·단체
노 인	(재)복지개발원	장애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환 경	부산환경운동연합	안전도 시재생	사회복지연대
공공 의료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주민	(사)이주민과함께, 이주민문화센터,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북한 이탈 주 민	부산인권상담센터	아동· 청소년	교육청,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아동옹호센터
여 성	(사)부산여성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인권문 화 등	부산인권포럼

▲정책과제 자문 기관과 단체 (총14개)



▲부서협의 진행 (16개 부서)

마침내 심의! ▶



제2차 부산시 인권정책기본계획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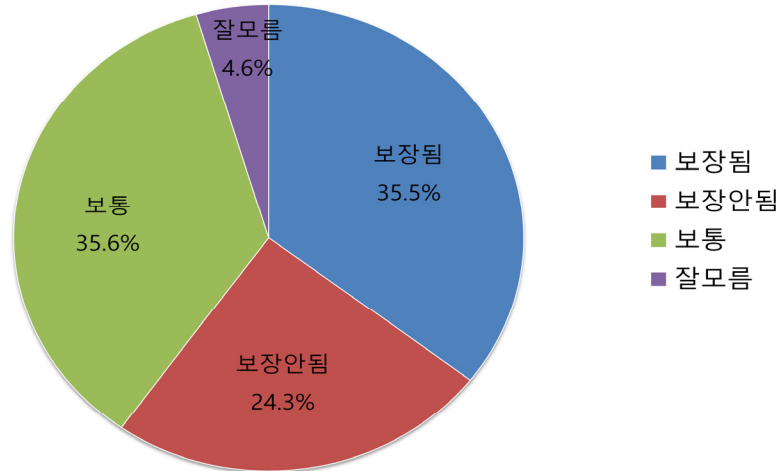
부산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출처 : 2020.1 부산광역시 인권정책기본계획 연구보고서
(2019.6 부산시민 1,000명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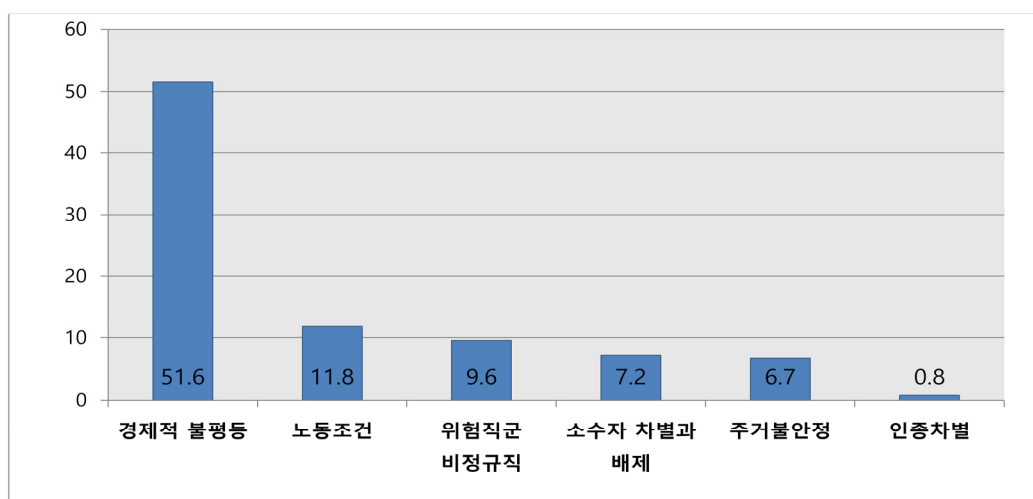
부산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1.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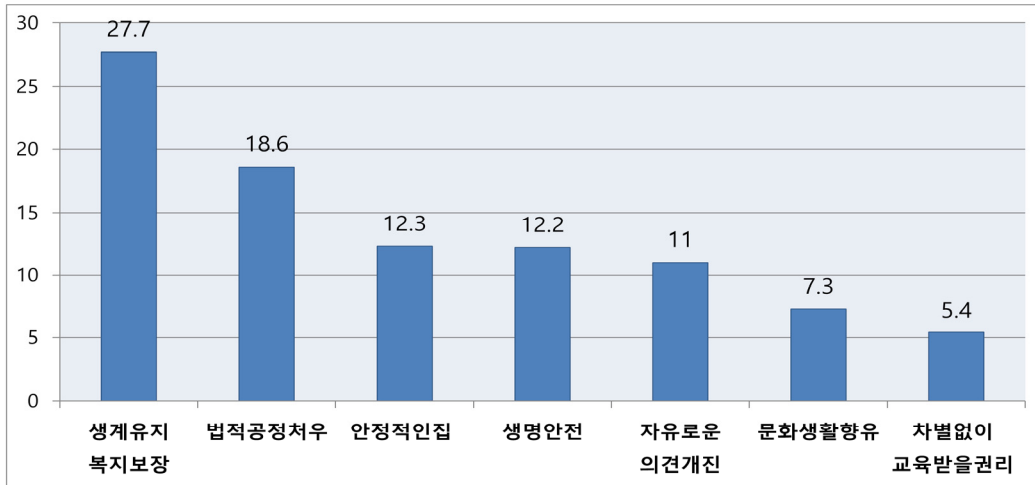
부산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2. 부산시의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는?



부산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3. 부산시, 가장 우선 보장되어야 할 인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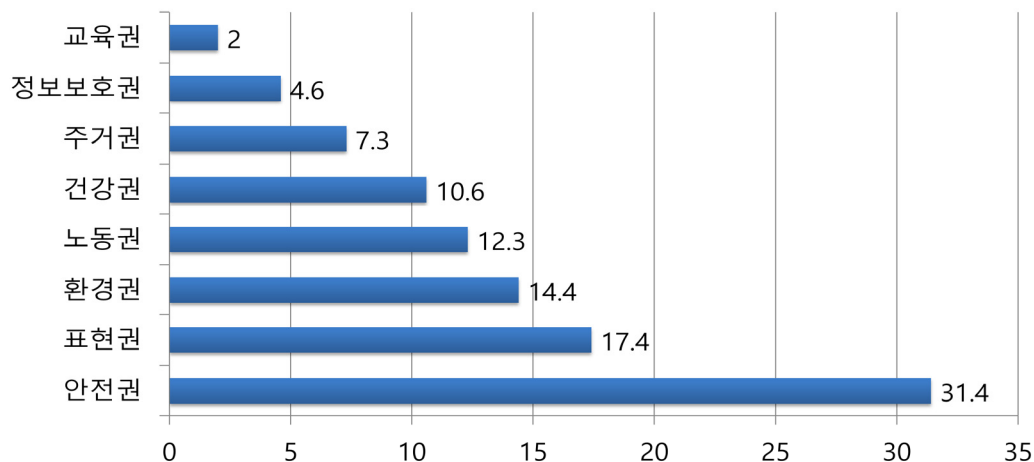
부산시 공무원 업무관련 인권의식 조사

출처 : 2020.1 부산광역시 인권정책기본계획 연구보고서
(2019.6 부산시 산하 공무원 2,321명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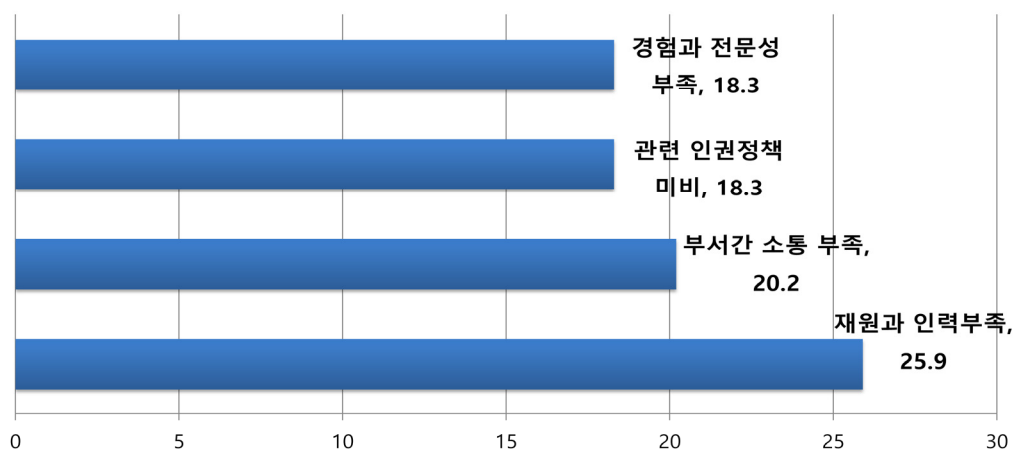
부산시 공무원 업무관련 인권의식 조사결과

1. 부산시가 가장 우선 보장해야 할 인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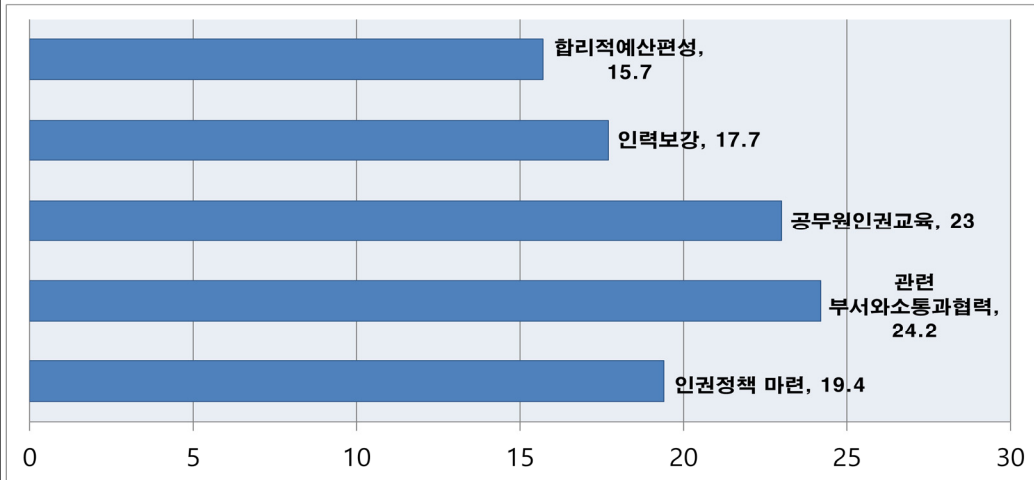
부산시 공무원 업무관련 인권의식 조사결과

2. 부산시 인권시책 추진의 어려움은?



부산시 공무원 업무관련 인권의식 조사결과

3. 나의 업무에서 시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제2차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2020~2024)



비전	누구나 안심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권도시 부산	
전략	평등 참여 포용	
정책목표	추진방향	정책과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 인권행정 체계 구축 - 인권정책 기본계획 실행조사 및 이행점검 운영 - 인권친화적 행정환경 조성 - 인권침해 보호 및 구제 - 시민이 참여하는 인권행정 조성 - 국내외 인권도시 협력체계 구축	2개 과제 2개 과제 3개 과제 1개 과제 2개 과제 3개 과제
안전한 도시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 대비체계 마련 - 시민 생명 존중 지원 체계 강화 -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으로 시민 신뢰 증대	3개 과제 2개 과제 6개 과제
건강한 환경도시	-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에 거각 불평등 해소 - 맑은을 확보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 - 녹지와 공원 확대에 건강한 시민 생활 도모 - 기후위기 대책 마련으로 취약계층 보호	2개 과제 2개 과제 2개 과제 3개 과제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도시	- 차별없는 도시건축을 인권기준 마련 - 공간재구성을 통한 인권친화적 도시 재생 - 사회적약자의 이동권 보장 - 인권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 인식 전환	3개 과제 1개 과제 2개 과제 4개 과제
더불어 행복한 도시	- 여성이 안심할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 시민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권리 승신 -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장애인 권리 증진 - 노인이 행복한 삶의 질 보장 - 아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증진 -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의 인권증진	12개 과제 9개 과제 9개 과제 14개 과제 11개 과제 2개 과제



10대 핵심과제

정책목표	핵심 과제	중요과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①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2개 과제
안전한 도시	② 원전안전 소통협의회 운영	2개 과제
건강한 환경 도시	③ 공공의료기관 확충	3개 과제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 도시	④ 인권주간 선포 및 참여 확대	3개 과제
더불어 행복한 도시 (사회적 약자와 함께)	⑤ 여성 :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력체계 구축 ⑥ 아동청소년 : 청소년 및 청년 노동권리 보호 ⑦ 장애인 : 거주시설 장애인 등 탈시설 자립지원 단계적 추진 ⑧ 노인 : 세대융합프로그램 지원 확대 ⑨ 이주민 : 이주민 거점의료기관 지정 ⑩ 국가폭력피해자(형제복지원) :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 확대	16개 과제

▶ 10대 핵심과제, 26개 중요과제, 64개 일반과제 (시민 누구나 27개, 사회적 약자 37개)



인권행정 추진체계



제2차 인권정책기본계획 의의와 과제



2차 기본계획의 의의

▶ 1차 기본계획 수립과정과 비교

- 인권담당 부서 출발 : 2019.1 인권노동정책담당관 (팀→과)
- 인권위원회 활성화 : 2019.1 인권조례 개정으로 민간 위원장 선출

▶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 (Bottom up)

- 인권과제 발굴 : 폭넓은 의견 수렴 (인권활동가, 전문가, 기관과 단체)
- 부산시민의 인권,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과제 선정
- 해당 부서들과 과제협의 (인권위원회+인권증진팀에서 진행)

▶ 기본계획 수립과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명료하게 정리

➔ 인권행정 + 인권거버넌스 + 인권네트워크 수립 과정임



향후 과제

Q : 각 지자체마다 독자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가?

- 국가인권기본계획(NAP)과의 일관성을 갖고 지역의 특수성을 보완하여 마련될 방안은 없을까?
- 부산시의 기본계획은 구·군의 인권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일관성과 구·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마련될 방안은 없을까?

**! : 인권 관련 많은 사업들이 이미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로 모른다. (관련 조례들도 각각 존재한다)**

- 부서칸막이를 낮추고 인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방안 필요
- 인권기본조례를 중심으로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향후 과제

1. 어떻게 실행·실천할 것인가?

- 인권정책회의의 구성하여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의견과 방향 도출
- 인권위원회 보고 및 협의

2. 인권행정체계 구축 (인권센터 설치)

- 인권부서 역량 강화 (인원, 예산, 전문성)
- 전체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부서로 재편
-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인권위원회는 비상임 자문심의기구
 - 담당공무원은 순환보직



향후 과제

3. 인권네트워크 튼튼하게

- 인권현장·인권단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모니터링 및 현장의 목소리 수렴
- 전문그룹(개인 및 단체)들과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책 역량 강화

4. 전문역량 강화

-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인권정책수립 가능한 단체, 기관, 연구역량 취약
➔ 지역 상황을 잘 모르는 수도권 연구단체 쏠림 현상
- 지역에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발굴, 지원, 협력 등)



인권도시 부산
함께 만듭시다!



Ⅱ 토론 1 Ⅱ

지방자치단체 인권 제도 실효적 이행을 위한 과제 -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1. 들어가며

인권을 실효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지자체 인권보장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 인권레짐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설계 없이 시작된 지자체 인권보장체제는 초기 도입단계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즉, 지자체 인권제도가 실효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인권기본조례와 인권기구(추진 체계), 인권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집행되어야 하는데, 어느 하나가 소홀하거나 아예 마련조차 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단체장에 의지에 의존했던 인권행정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인권행정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를 비롯한 인권제도의 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 지자체 인권위원회다. 인권위원회는 지자체와 인권옹호자 및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로 주로 단체장의 심의·자문기구로서 존재하며 인권의제 발굴 및 설정, 감시 및 견제 등 지자체 인권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인권 기본조례에는 빠짐없이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다.

설치 목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인권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자체 인권위원회가 행정기관에 대해 독립적 위상과 기능, 역할을 보장받아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인권행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심의·자문의 기능을 넘어서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오늘 개최되는 부산인권사무소 개소 15주년 기념 ‘지역사회 인권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다뤄질 논의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2.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지자체 인권위원회는 인권행정의 실현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인권거버넌스의 역할을 한다. 인권위원회의 위원은 일반적으로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지닌 주민대표를 시민사회, 지방의회, 집행부의 추천을 받아 지자체장이 임명

한다. 인권위원회 구성 및 기능은 지자체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민간이 함께 구성된 민관합동형 위원회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배제되거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자체의 인권담당 부서장 1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구분된다. 특히, 지자체 인권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관건으로 작용한다.¹⁾

(1) 광역 지자체 인권위원회 구성 현황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17개 광역지자체는 2012년 광주, 서울, 부산, 2013년에 대전, 울산, 충남, 2014년에 강원, 충북, 2015년에 세종, 전남, 전북, 2016년에 경기, 제주도, 2018년에 대구, 2019년 인천과 경남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경북은 아직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다.

명칭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이하여 서울, **부산**,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세종 등 11곳에서 “인권위원회”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구, 인천, 전남, 경북, 제주 등 5곳이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로 광주가 “인권증진시민위원회”로 사용하고 있다.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시·도 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며 현재 위원장은 교수 5명, 변호사 2명, 인권시민단체 7명 등이다.

〈표 1〉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명칭 및 위원장 (2019년 자료)

	지역	인권위원회 명칭	위원장	
1	서울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명(당연직 1명)
2	부산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정귀순(이주민과함께 상임이사)	14명(당연직 2명)
3	광주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안진(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명(당연직 1명)
4	대전	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	양해림(충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12명(당연직 1명)
5	대구	대구광역시 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	조성제(대구한의대 교수)	14명(당연직 4명)

1)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201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2016.

	지역	인권위원회 명칭	위원장	
6	울산	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최민식(울산인권교육연구소)	14명(당연직 1명)
7	인천	인천광역시 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	윤대기(변호사)	15명(당연직 1명)
8	경기	경기도 인권위원회	홍세화(장발장은행)	14명(당연직 1명)
9	강원	강원도 인권위원회	김진희(원주시민연대 운영위원)	15명(당연직 1명)
10	충북	충청북도 인권위원회	홍성조(변호사)	15명(당연직1명)
11	충남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이진숙(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대표)	20명(당연직1명)
12	전북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정영선(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명(당연직3명)
13	전남	전라남도 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	김숙(전남이주여성쉼터 소장)	7명(당연직 1명)
14	경북	경상북도 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		
15	경남	경상남도 인권위원회		9명(2019.12.5.)
1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	신강협(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15명(당연직 1명)
17	세종	세종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행정부시장	15명(당연직2명)

(2) 인권위원회의 역할

① 심의·자문

인권위원회의 권한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심의·자문기구라는 것은 같다. 대상은 인권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지역 인권실천과제의 발굴, 인권정책에 대한 자문, 인권센터 및 인권옴부즈맨 등 인권조직과 기구의 운영에 대한 자문 등을 조례에 근거하여 수행한다.

② 권고

서울, 광주, 대전,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세종시 등 11곳에서는 심의·자문기능을 넘어 자치법규, 정책 등이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에서 단체장에게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조례로서 위원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③ 운영

인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는 대부분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뉘어 있으나, 대구와 경기도의 경우 단체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정기회는 보통 분기별(년4회) 또는 반기별(년2회)로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산, 전남, 세종시의 경우에는 년 1회로 되어 있다. 위원회 회의소집 및 안건의 제출 등을 행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인권정책을 심의·자문하거나 정책 개선권고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보인다.

〈표 2〉 부산울산경남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권한과 회의규정

	지역	인권위원회의 권한	회의
1	부산	〈심의·자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인권 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 발굴,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영향평가, 시민 인권현장 제정 또는 개정, 그 밖에 인권의 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정기회 1회 임시회
2	울산	〈심의〉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 인권센터 운영,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견진술〉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기회 2회 임시회
3	경남	〈심의〉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인권센터 운영,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기회 2회 임시회

3. 인권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논의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됐다. 지자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 인권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의 전환 또는 적어도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인권기구의 역할을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그동안 제기된 논의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심의·자문기구에서 합의제 행정기구로의 전환

대표적인 논의는 지자체인권위원회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 ‘합의제행정기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권정책연구소 김은희 연구원은 지자체 인권기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의 핵심은 바로 현재 자문기구인 인권위원회 위상의 제고라고 주장한다. 인권이 행정 본연의 목적이라는 인식이 당연한 경우라면 몰라도, 인권을 ‘one of them’ 정도나 심지어 불필요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집행부의 인권의 내재화가 척박한 현실에서는 자문기구로서의 인권위원회가 인권기구의 역할을 해내길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²⁾

연구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구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자문기구로 설치되고 있는 인권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116조3)에 근거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길 주장한다. 사례로는 서울시와 충청남도, 제주도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치한 전례를 들고 있다.⁴⁾ 최근에 설치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도 좋은 예가 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근거하지 않고 116조의 2를 근거로 자문기구로 묶어두고 있는 것은 행정이 거버넌스에 의해 간섭받지 않기 위한 행정편의, 관료중심적 관행이라 말하고 있다. 지자체 인권위원회가 지방행정에 대한 협력적 충고와 자문을 넘어 행정기관에 대한 인권적 감시기능, 즉 모니터링기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다양한 인권분야를 대표하면서 그에 따른 전문역량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하는 것과 함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2) 지자체 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광역지자체의 164명의 인권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과 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과제로, 인권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2) 김은희, ‘지역인권기구 독립성 확보 저해 요인 분석 - 광명시 사례를 중심으로’, 2018 서울 인권 컨퍼런스, 2018.

3)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4) 김형완, ‘한국에서의 지역인권의 제도화, 그 도전과 과제’, 2016 제2회 한국인권회의, 2016, 56-57면.

인권담당 부서의 적극적 협조와 지자체 단체장의 인권행정 의지를 강화하는 것을 선정했다.⁵⁾

또한, 현재의 지자체 인권위원회의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회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권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구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① 인권위원회의 권고 기능

지위에 따라 권한은 변화되지만, 지자체 인권위원회가 실효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자문기구로 남겨지더라도 최소한 지역 인권 사안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필요할 때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대부분 조례에서는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도지사)에게 개선권고’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권고 기능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전남 등 6곳에 불과하다.

한발 더 나아가 전북의 조례⁶⁾와 같이 인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단체장에게 권고하거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시정권고를 하는 권한을 인권위원회의 권한으로 부여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물론 이는 인권침해 구제기구로서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지만, 장래에 지자체 인권침해 구제기구의 설치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인권침해 시정권고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독자적인 권고안을 비상임위원들로 구성된 현재의 인권위원회에서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권고 기능이 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5)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201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2016,

6) 제17조(위원회의 업무)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제1호(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 결과에 따라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제1항 제5호(인권센터의 상담 및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시정 권고 등 도지사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의제를 발굴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지자체에 공식적인 답변을 구하는 적극적인 기능이지만, 이를 담보할 시스템이 현재까지는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이 또한 한계가 명확하다.

오히려 제주의 개정조례(안) 제13조의2(위원회의 전문가 위촉)와 같이 전문가를 보조자로 위촉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

② 인권위원회 심의 권한 확대 및 이행점검 제도화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인권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 인권위원회는 조례에 명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행정기관에서 선정하고 제공하는 인권의제를 다루는 것에 머물러있다. 대부분 인권조례에서는 “그 밖에 사안과 관련하여 시장(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를 전북의 조례와 같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항” 또는 서울처럼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인권의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확장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서울시의 경우 조례 제7조의 2(서울시인권정책회의)7)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시장의 주관 하에 인권위원장이 참가하는 인권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인권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관계 부서 간 협의·조정을 할 수 있게 제도화했다. 인권정책의 추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전 청 차원에서 가동하고 이에 인권위원회가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관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충남의 조례 제7조(인권증진시책토론회)와 같이 도지사 주관으로 년 2회 실국장급 공무원과 인권위원, 전문가, 인권지킴이단, 전문가 등 참석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행,

7) 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서울시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회의는 시장이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과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참석한다.

③ 정책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부서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기타 중요한 인권정책으로 통일적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④ 정책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정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인권행정 실현을 위해 관계 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도 좋은 사례로 보인다. 최근 들어 제주 역시 개정조례안 제4조의3(인권정책협의회)을 통해 이행사항 점검을 정례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준비하고 있다.

③ 인권위원회 안정적 운영

인권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알리바이 기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해 자문을 하고 지역의 인권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위원회에서 논의될 의제의 선정과 관련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 일 년에 한두 차례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인권행정을 자문하고 지역 인권현안에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지자체 인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는 대부분 행정에서 사전에 준비한 안건만을 소극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권위원회에서 논의될 의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의제에 대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인권위원들에게 의제를 공유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인권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활동을 보조할 사무국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심의·자문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사무국 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사무지원을 위한 장치를 모색해야 한다.

④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

인권기본조례의 시행규칙을 마련한 사례는 서울, 경기, 강원, 인천, 광주, 전남, 전북 등 7개 지자체다. 이들 시행규칙은 인권센터의 운영 또는 인권보호관의 사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모두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 인권침해 구제만은 아니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시행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앞서 지적한 바처럼 인권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인권위원회 사무지원 등을 규정하거나 인권교육을 비롯한 인권정책의 추진 점검 회의에 관한 사항, 인권위원의 추천·선임절차 등을 규정하는 시행규칙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절차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인권위원 추천과 선임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권위원의 자격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 지자체 인권위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인권전문가의 자격을 갖춘 역량 있는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인권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선임절차를 제도화하여 전라북도 제2기와 제3기의 무자격 인권위원 위촉 과정과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지역 인권레짐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인권위원회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강조했다. 제도의 보완을 통한 지자체 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는 많은 논의와 도전을 통해 보안 될 것이다. 문제는 이에 걸맞은 인권위원들로 지자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점차 강화되는 지자체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적합한 (인권전문성을 담지 하고 있는) 위원으로 구성할지가 핵심이다.

지자체 인권행정을 논의하고 도전해온 지 10여 년이 흘렀다. 처음에는 일부 단체장의 의지에 의존하여 인권행정이 추진됐다. 하지만 언제까지 단체장의 의지와 선의에 기반 하여 인권행정을 펼쳐갈 수는 없다. 4년 주기로 바뀌는 정치지형에 인권행정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궁극적으로 지역 인권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핵심이다. 독립성이 부여된 지역 인권레짐의 구축, 비판과 협력이 가능한 인권시민사회가 있어야 인권행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마다 인권역량은 천양지차다. 서울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지역의 인권역량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역량이지만 이를 기초로 지역인권시민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행정을 안정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의 인권역량을 육성하는 작업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무소 15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로 마련된 ‘지역사회 인권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부산인권사무소의 역할과 과제를 고민하고 나누는 자리가 없는

것이 매우 아쉽다. 인권위원회가 발제 또는 패널로 참여해서 지역사무소의 지역인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인권시민사회 및 학계와 함께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면 의미가 배가되었을 것이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지자체 인권조례가 급속도로 확산하였다. 많은 우려 속에서도 지역사회 인권보장체계 역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중앙정부의 사무로만 인식되던 인권사무를 확장해냈던 것과 같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과제에 대응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부산인권사무소 15주년을 축하하며 다시 한번 인권위의 역할을 기대한다.

지역사회 인권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

Ⅱ 토론 2 Ⅱ

지자체 인권제도 실효적 이행을 위한 과제

이정은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자체 인권기본계획수립 방향과 과제

이 정 은(창원대학교 사회학과)

인권의 제도화

- 인권의 정당성 확보, 인권 실현을 위한 법률, 규범, 조직 등의 장치들을 의식적으로 구축해가는 과정
- 인권향상을 위한 도구적 장치를 마련한 후, 인권의 가치가 하나의 안정적 질서로 작동하도록 함 – system 구축

인권 레짐의 구축

- UN의 인권체계
- 국가인권위원회
- 중앙정부의 인권정책(NAP)
- 지방정부의 인권 규범, 제도, 정책
: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 ✓ 규범: 인권기본조례
 - ✓ 제도: 인권전담부서,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등
 - ✓ 정책: 인권기본계획, 인권실태조사, 인권지표, 인권영향평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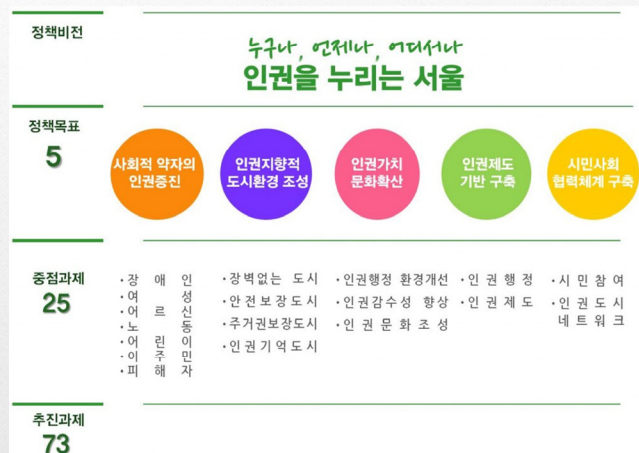
인권기본계획 수립 목적

- 인권: 보편적인 가치/ 정치적인 논쟁 대상
 - 인권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방향 제시
1. 지역 인권정책의 목표와 지역적 특성 반영
 2. 지역의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인권실태조사, 이행평가의 안정적인 제도화

표준화된 인권기본계획

- 지방정부의 표준화된 인권정책기본계획
- 비전/ 추진전략/ 정책목표/ 추진과제(세부추진과제)
- 정책목표
 -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보장
 - ✓ 인권제도기반구축
 - ✓ 인권가치 및 문화의 확산, 교육포함
 - ✓ 인권친화적 도시환경조성

서울시 1차 인권기본계획(2013~2017)



서울시 2차 인권기본계획(2018~2022)

비전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		
방향	함께 누리는 인권도시	포용하는 인권도시	참여하는 인권도시
정책목표	시민 생활인권 확대	인권친화 도시공간 조성	차이존중 인권문화 확산 인권제도 및 협치 강화

서울시 1,2차 인권기본계획 구성 비교

	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비고
비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	공동체 고려, '인권특별시'의 면모 강조
방향	- 시민참여 보장 - 인권정책의 책무성 및 실행력 제고 - 사회적 약자의 차별금지 및 다양성 존중 - 시민주체의 능동적 인권가치 창출 - 보편적 국제인권기준 고려	- 함께 누리는 인권도시 - 포용하는 인권도시 - 참여하는 인권도시	주민의 인권역량 증진 강조 사회경제적, 문화상징적, 정치참여적 방향 체계화
정책 목표	-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 인권 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 인권가치 문화 확산 - 인권제도 기반 구축 -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 시민 생활인권 확대 - 인권친화 도시공간 조성 - 차이존중 인권문화 확산 - 인권제도 및 협치 강화	사회적 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정책목표의 수준을 균일화
중점 과제	25개	10개	서울의 선도적 과제 시급한 일을 압축적으로 제시
추진 과제	73개(세부과제)	40개	실행가능, 구체적인 인권과제 선별

부산시 1차 인권기본계획(2014~2018)

비전	누구에게나 평등한 글로벌 인권도시, 부산				
목표	시민의 인권보장, 인권취약계층의 인권증진	공정하고 차별없는 인권도시 인프라 구축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조성	인권행정·제도·문화·교육의 선진화	시민사회와 소통·상생·협력하는 시스템 구축
원칙	배려		나눔		소통
전략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 국적에 상관 없이 누구나 어디든 할 수 있는 인권정책개발	인권관련 법·제도를 재정비하고, 안전이 보장된 무장에도 시설계	문화적·언어적·종교적 차이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도시조성	인권행정·문화·교육·홍보강화	부산지역 인권단체와 교류하고 소통하는 거버넌스 구축
추진 과제	-여성인권진흥원 설립 -아동청소년 인권포럼 구성 및 운영 -부산노인인권 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위한 지원 확대 -장애인경제자유구역 기반 확대 등	-부산형 무장예 도시 만들기 매뉴얼 작성 -사회적 약자의 개별인권 보장 및 증진계획 수립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 주변 환경 및 관리 프로그램 조사 등	-부산시민을 위한 다문화 교육 실시 -외국인 차별사태 신고센터 운영 -외국인 지원기관 통합 네트워크 구축 등	-인권전담부서 신설 -부산인권센터 설치 -시민 인권문화 의식 확산 -지속가능한 시민인권 교육추진시스템 구축 -인권 아카데미 등	-시민사회와 소통 참여 인권아카데미 공모 -인권단체 협력 프로그램 추진 -인권단체 협력사업 공모 추진 등

부산광역시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2020~2024)

비전	누구나 안심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권도시 부산		
전략	평등	참여	포용
정책목표	추진방향		정책과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 인권행정 체계 구축 - 인권정책 기본계획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운영 - 인권친화적 행정환경 조성 - 인권침해 보호 및 구제 - 시민이 참여하는 인권행정 조성 - 국내외 인권도시 협력체계 구축		2개 과제 2개 과제 3개 과제 1개 과제 2개 과제 3개 과제
안전한 도시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 대비체계 마련 - 시민 생명 존중 지원 체계 강화 -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으로 시민 신뢰 증대		3개 과제 2개 과제 6개 과제
건강한 환경도시	- 공공이용서비스 확대를 통한 불평등 해소 - 원인을 확보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 - 녹지와 공원 확대를 통한 건강한 시민 생활 도모 - 기후위기 대책 마련으로 취약계층 보호		2개 과제 2개 과제 2개 과제 3개 과제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도시	- 차별없는 도시건축을 인권기준 마련 - 공간재구성을 통한 인권친화적 도시 재생 - 사회적약자의 이동권 보장 - 인권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 인식 전환		3개 과제 1개 과제 2개 과제 4개 과제
더불어 행복한 도시	-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 시민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 - 언어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장애인 권리 증진 - 노인이 행복한 삶의 질 보장 - 아주먼저 복원아파트주민의 인권증진 - 형제복지시설사건 피해자의 인권증진		12개 과제 9개 과제 9개 과제 14개 과제 11개 과제 2개 과제

부산시 1, 2차 인권기본계획 구성 비교

- 비전
 - ✓ 1차: 누구에게나 평등한 글로벌 인권도시
 - ✓ 2차: 누구나 안심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권도시
- 지향하는 인권정책의 실효성 고려
 - ✓ 정책 목표의 구체화, 실천성
 - ✓ 100개 과제(신규과제 41, 계속과제 59)/ 핵심과제(10), 중요과제(26개)
 - ✓ 인권 행정 구현 의지, 담당부서의 책임성
 - ✓ 인권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용, 시민사회의 참여

인권기본계획의 지방정부 특성 반영

- ✓ 지방정부의 자원과 특성 반영
- ✓ 지역의 인권문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
- ✓ 다른 기본계획과의 관계 정립
- ✓ 과제의 시급성, 목표의 적합성, 실행가능성
- ✓ 중앙정부와의 연계

지자체 인권기본계획의 비전과 지역적 특성

지역	인권기본계획의 비전	기간	배경	지역 특성 사업
광주	시민을 품고 세계와 연대하는 공존과 포용의 인권공동체 광주(2차)	2018~2021	5.18민주화운동	사회적 약자별 기본계획 구체화, 인권마을사업
서울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2차)	2018~2022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는 글로벌 도시, 차이를 포용하는 개방적 인권공동체	아르바이트 청소년노동권, 갑질 근절 및 예방, 자살율을 줄여가는 도시
부산	누구나 안심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권도시 부산(2차)	2020~2024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형제복지원 사건피해자 인권, 원전안전,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충남	모두가 행복한 인권 충남	2015~2019	차별·수탈에 대한 저항의식, 인권평등, 민주 가치	송선로 주변지역주민, 태안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주민대상
경기	모두가 활짝 웃는 따뜻하고 복된 인권도시	2015~2020	.	사회적 약자의 보건복지, 인권지향적 도시환경조성

지자체 인권기본계획의 비전과 지역적 특성

지역	인권기본계획의 비전	기간	배경	지역 특성 사업
전남	義로운 고장, 인권이 살아 있는 생명의 땅 전남	2016~2020	임진왜란, 동학농민혁명 광주학생운동 등을 아우르는 義의 고장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섬지역 생활불편해소, 오벽지 교통, 영화, 독서문화환경조성
울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도시 울산	2016~2020	.	노동의 역사를 기억하는 도시, 노동복지타운 조성
대전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2016~2020	을미의병근거지 3.8민주주의 의거	여성과학기술인 연구단절 예방,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강원	사람/환경/평화, 인권道 강원	2015~2019	세계적 생태환경의 보고, 분단지역	자연과 인간이 함께 숨쉬는 환경도시,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인권평화도시
충북	모두가 함께 하는 인권 충북도 실현	2016~2020	의병배출,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노인이동권, 수화언어 기본법, 북한이탈주민지원, 존엄사할 권리 연구

지자체 인권기본계획의 비전과 지역적 특성

지역	인권기본계획의 비전	기간	배경	지역 특성 사업
세종	인권중심, 행정중심 세종시	2016~2020	계획행정도시, 도농복합도시	무장애도시, 어르신행복도시, 다문화국제도시 등
전북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	2017~2021	.	인권행정 우수 읍면동지정, 방문형 인권상담
제주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2018~2020	4·3사건, 세월세주인, 간첩조작사건과 개발·보전의 대립, 세계평화의 섬 지정	소수사 인권운동장, 제주인권회의, 국제평화와 인권의 섬 구축, 평화와 인권가치 확산 ODA
대구	인권을 실현하는 시민행복도시 대구	2018~2022	국난극복과 민주화, 시민정신의 발원지,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인권존중 지역문화 확산, 인권도시 환경조성, 인권보장 및 증진체계 구축

인권기본계획 수립과정

- 인권기본계획 수립: 구상과 실행의 분리
- ✓ 연구용역 / 연구용역 + 내부조율 / 자체 수립
- 전문가, 자문기구를 통한 구상, 전문가 중심 계획
- 인권기본계획 담당자의 의견반영 없는 기본계획
예) 서울시 모니터링 결과(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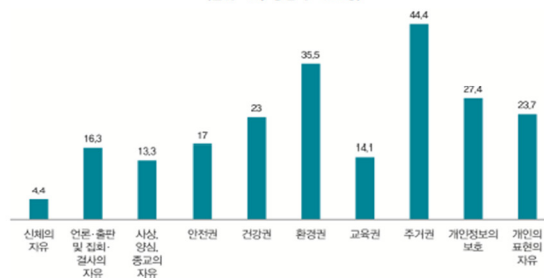
서울시 인권기본계획 정책 모니터링 결과

- 설문기간: 2017.2.22-3.3
- 설문대상: 인권기본계획 담당자 목록에서 확인된 성명을 전자우편 시스템에서 검색, e-mail 전자 설문 발송
- 전체 대상 429 중 135명 응답(응답률: 31.4%)
- 인권기본계획사업 담당공무원 중, 인권기본계획 인지비율(30%)

인권 모니터링 결과

각 분야의 인권이 존중받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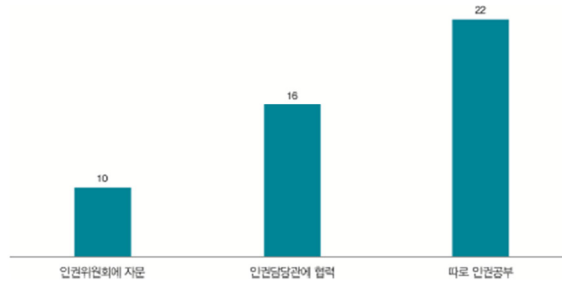
[그림 4-2-6] 서울시민들이 각 분야의 인권에서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 비율('전혀 존중되지 않는다.'와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를 합친 비율)
(단위: %, 응답자: 135명)



인권 모니터링 결과

인권사업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경험

[그림 4-3-3] 인권정책 기본계획 세부사업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 경험(단위: 명)



인권기본계획의 실효성

• 담당 공무원 인터뷰

“실효성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인권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기에 넣어라, 저기에 넣어라 하는 게 많고, 결국에는 인권기본계획의 방향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하는 거고, 인권과에서 피드백이 오는 것 같지도 않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인권 제도화의 현실

- 중앙, 지방정부
 - ✓ 단체장의 의지에 의존: 인권행정과 정책의 중요성, 공고화
 - ✓ 담당자와 전문가의 인권역량 강화 ➡ 부산인권사무소
 - ✓ 생활밀착형 인권정책 - 사회불평등, 차별 문제와 연결
 - ✓ ➡ 군, 구의 인권정책(Bottom up): 실태조사
 - ✓ 관료적 중립성 & 인권의 원칙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집행의 과제

- 연구용역+위원회+지방정부 담당부서의 공동참여
 - ✓ TFT 구성: 주무부서+전문가+인권위원회+실무자로 구성
 - ✓ 세부 사업을 시행하는 각 실국의 장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구성
 - ✓ 지역의 인권문제를 발굴, 지방정부의 정책 목표와 연계

인권기본계획 수립의 과제

- **인권기본계획의 전략적 수립**

- ✓ 타 기본계획과의 중복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 필요
- ✓ 계속 사업과 중점사업을 구분, 계량화된 목표의 이행보다는 장기과제, 단기과제의 구분필요
- ✓ 잦은 인사이동 고려, 업무 정착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인력 배치

광역/기초자치단체 인권정책의 차이는?

- **지방정부가 인권거버넌스와 인권 행정의 틀 제시**

- ✓ 지방정부의 인권기본계획을 전제
- ✓ 행정력 부족

- **기초자치단체: 생활밀착형, 주민 요구 문제 해결**

- ✓ 인권실태조사 활용의 적극성
- ✓ 군, 구의 인권기본계획 수립의 차별성

자치구 인권기본계획의 특성

지역	인권기본계획의 비전	기간	담당부서	목록	정책목표
강북구	주인이 만드는 평화인권도시 강북	2019~2023	감사담당관	4대 정책목표 16대 중점추진과제 59개 세부추진과제	사회적 권리강화로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친화적 환경조성 인권행정 구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도봉구		2018~2020	감사담당관		인권치향적 도시환경조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존중 문화조성 인권친화적 행정환경 조성 인권 거버넌스 구축

자치구 인권기본계획의 특성

지역	인권기본계획의 비전	기간	담당부서	추진방향/분야별 현황	정책목표
노원구	가장 행복한 구민! 노원 (no.1) 구민!	2019~20 23	감사담당관	인권행정체계 구축 인권인식확립교육 민관협력체계구축 5대추진과제 14개 중점과제 60개 세부사업	사람우선! 노원 수혜자중심의 맞춤형인권교육 인권친화적 마을환경조성 사회적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제도기반구축 인권거버넌스구축
은평구	자연과 인간의 좋은 삶을 실현하는 도시, 인권은평	2018~20 22	감사담당관	* 협치도시 : 참여권, 연대권 * 학습도시 : 교육권, 문화권 3대 정책 목표 8대 중점 과제 36개 세부과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 보장 사회적 형평성 보장 생태적으로 쾌적한 삶 보장

자치구 인권기본계획의 특성

지역	인권기본계획의 비전	기간	담당부서	추진과제	정책목표
구로구	주민참여와 자치로 만드는 인권도시 구로	2018~2022	감사실	4대 정책목표 3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친화적 도시환경 구축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인권행정 구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금천구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행복도시 금천 실현	2018~2022	민원감사담당관	인권침해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행위조사 등 인권기본조례제정추진, 인권위원회구성 인권정보정책모니터링 인권배움터 맞춤형인권교육 등	인권침해 권리구제를 통한 인권보호강화 지속가능한 인권정책추진체계 형성 인권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홍보확대 인권거버넌스 체계확립

인권기본계획 수립의 과제

• 기본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탄력적 운용

- ✓ 계량화된 목표고려와 인권행정의 상 정립
- ✓ 정책성과를 수치화된 결과로 평가는 행정시스템이 인권사업이나 정책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만큼, 사업 평가를 통해 탄력적 사업운용
- ✓ 실태조사에 기반한 사업진행
- ✓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진행

인권기본계획 수립의 과제

-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너무 많이 소비되는 에너지
- 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정기 보고서 작성(조례 포함여부)
- 기존의 사업을 인권기본계획으로 정리
- 기존/신규사업 중 선도 사업,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 선정, 집중

인권기본계획의 전략적 수립과 이행

- 타 기본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 필요
- 전략적 인권실태조사 필요
 - 포괄적인 인권의식, 인권문제에 대한 질문 지양
 - 자치구에서 해결해야 할 인권문제 조사
- 계속 사업과 중점사업을 구분, 계량화된 목표의 이행보다는 장기과제, 단기과제의 구분필요
- 잦은 인사이동 고려, 업무 정착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인력 배치

인권의 제도화의 과제

- 시민사회
 - ✓ 정부의 전략적 인권의 제도화를 실천적 논의로 이끌어 갈 주체 역량 강화
 - ✓ 개별 집단의 권리로 축소되는 분야별 운동의 한계 비판
 - ✓ 제도의 영역과 광장의 영역을 넘나드는 자율성
- 인권정책의 궁극적 목표 실현
 - ✓ 주민들이 현실에서 접하는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력
 - ✓ (광역/ 군구)자치단체협의회 활용, 네트워크 정보 교환

“인권의 제도화를 인권실천의 장으로”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인권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

| 인 쇄 | 2020년 10월

| 발 행 | 2020년 10월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 주 소 | (476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회관 8층

| 전 화 | (051) 710-9720 | F A X | (051) 710-9717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